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2

발의연월일: 2021. 3. 26.

발 의 자:설 훈·강득구·강민정

강훈식 · 고영인 · 기동민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상희 · 김성환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김한정 · 김홍걸 · 도종환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박성준 • 박홍근 • 배진교

서동용 • 서영교 • 서영석

소병훈 · 송갑석 · 송옥주

신정훈 · 안민석 · 안호영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워영

양정숙・양향자・오영환

위성곤・유기홍・유정주

유영덕 • 윤재갑 • 이동주

이병훈 · 이상직 · 이상헌

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장경태·장철민·전혜숙

정일영 · 정태호 · 정필모

조정식·최종윤·한병도 한준호·허종식·홍기원 황운하 의원(73인)

제안이유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 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함.

그런데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0조).
-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

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8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 인권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2.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3. 민주화운동희생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 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 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 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4.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된 사람
- 제6조(예우 원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 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 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 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6.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43

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②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 ③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함께 소멸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 진 경우
-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민주 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위유지 의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육지원

-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 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1. 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2.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 정된 사람의 자녀
- 제13조(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제14조(교육지원 신청)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

- 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 험정보"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

- 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 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 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4.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5.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 정된 사람의 자녀
- 제21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 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2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 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지원

- 제23조(의료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 제24조(진료) ①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

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 1. 민주화운동희생자
- 2. 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 3.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 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의 지원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보철구 지급)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 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 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대부

- 제28조(대부)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 제2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주유공자
 - 2.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2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 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제3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토구입대부
 -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생활안정대부
- 제32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 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의 평가액 이내
 -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 제3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 제3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 2. 주택대부: 20년
 - 3. 생활안정대부: 5년
 -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화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37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 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 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 증을 할 수 있다.
 -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사람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④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한다.

-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 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 가피하게 된 경우
-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 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 ①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가능하다.
- ⑧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 (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

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29 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 金)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0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 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 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그 밖의 지원

- 제42조(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 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민주유공자
 - 2.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3.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 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다.
- 제45조(양육지원) 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 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4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 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49조(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 묘지 경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51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7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2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3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43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

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 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제52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제5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 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

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의 유 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 이 경과한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53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 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 2. 제8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
- 6.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 7. 제41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 8. 제43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9. 제5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10. 제53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 11. 제54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민주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민주유공 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 2. 제16조제6항(제42조제2항 후단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3.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과태료) ①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 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